

윤리 행동 기준

기본적인 사항

관계법령, 사회규범 및 사회규칙등을 준수하고, 거래처와 다른 사람과의 계약 조건등을 확인·이행하고, 적법, 공정히 회사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위반, 규칙위반과 반윤리적인 행동등의 마이너스 정보는 감춤없이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한다.

지득한 당사 내부정보(개인정보를 포함)를 비밀을 준수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한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자산(설비, 기계, 기기, 비품, 용품등)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예의를 갖추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차별 및 성희롱, 비방, 중상모략등의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법령, 회사규범등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평가, 신용을 깨트리지 않도록 한다.

해외에서는 그 나라의 법령과 국제룰을 존중함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을 존중하고, 사업활동과 일상 생활행동을 행한다.

공통 사항

업무를 통해서 지득한 당사, 관련회사, 거래처 미개시 비밀정보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 거래를 행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세력, 단체로부터 접촉을 받을때, 트러블에 휘말렸을때에는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총무부서에 보고, 상담한다.

업무에 관한 개인관계에 있어서는 절도있는 의례 교제를 유의 해 건전한 상관습과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이익(금전, 물품, 접대, 편리)의 제공을 행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저작물과 소프트웨어등의 부정 사용등에 의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판매업무 관계

관계법령과 거래기본계약등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매활동을 행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해서 거래처와 신뢰관계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판매 카르텔, 담합 등)는 행하지 않는다.

업계단체 회합 혹은 동종업 타사와의 회합, 면담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화제가 되었던 때에는 즉시 퇴석하고, 혹은 회합, 면담등을 중단하고, 그 취지를 상사 및 법무부서에 보고 한다.

동종 타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안을 받았던 때에는 즉시 명확히 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그 취지를 상사 및 법무부서에 보고 한다.

정치, 행정관계자와 절도있는 예의 교제를 유의하여, 법령등에 조촉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이익의 제공은 일절 행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서 요구가 있어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

판매처와 절도 있는 예의, 교제를 유의하여, 건전한 상관습과 사회통념을 벗어난 이익의 제공을 행하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

제품, 기술을 수출 할 경우에는 외국환 법 등의 수출관리 법령 및 사내 규칙을 준수하고, 적합하게 수출을 행한다.

거래처에서 크레임은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함께 동시에, 성의를 다하여 정확하게 대응한다.

구매업무 관계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구매활동을 행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하여,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유지, 향상하도록 노력한다.

하청업자와의 거래는 하청법(하청대금 지불지연 방지법)을 준수하고 행한다.

구매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건전한 상관습과 사회통념을 벗어난 이익을 제공을 받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특정 업자를 배제 하지 않도록 한다.

생산업무 관계

작업기준 · 작업표준·작업 매뉴얼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한 조업 · 작업 및 설비 ·기계 보수, 안전에 노력하고, 지역환경,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

환경 · 안전위생 관계, 그 외로 요구되어지는 행정기관으로의 보고 · 신고등은 조사와 검사를 적정히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보고를 행하고, 허위 보고와 데이터를 개찬한 보고등은 행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에 의한 법령 규제의 위한 하는 상태(오염유출 등)가 발생한 경우, 혹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취지에 따라 사후 조치를 강구한다.

안전위생 관계법령 및 사내 안전 위생 규칙, 안전작업 표준, 작업 매뉴얼등을 준수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조기술과 Know-how등의 기술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유저 기술자등 외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로 중요한 정보를 개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제조 · 가공, 검사, 포장등의 작업을 적정 · 정확히 행하고, 제품의결함에 의한 PL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없도록 노력한다.

연구개발 업무

타회사의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타회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 · 전용등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기술공여와 공동연구개발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지적 재산권등의 정당한 행사와 비밀정보 보호등의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제한 하거나, 특정 회사의 시장에서 배제하도록 약정을 하지 않는다.

개발한 신기술, 기존 제조기술 · Know-How등의 기술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개발 상대방의 기술자, 기타 외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채, 중요한 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 한다.

본인이 행한 발명, 고안, 의장의 제작의 비밀을 유지 보호하고, 외부에 발표는 사내 룰에 따라 행한다.

공동연구와 공동개발의 상대방과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등은 성실히 이행한다.